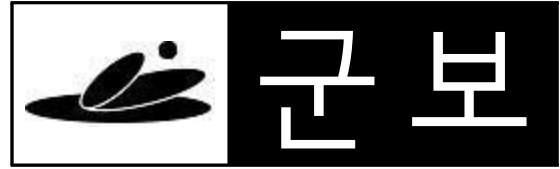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48호 2022. 1. 18.(화)

공 고

- 예산군 예산읍 공고 제2022-1호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입법예고

- 예산군 고시 제2022-100호 :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예산군 고시 제2022-116호 :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회									
람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담당관 ☎ 339-7144)

제2022-1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고하오니,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3.5cm×4.5cm)과 학생증(또는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신분증 지참 동행)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 1. 17. ~ 2022. 2. 7.

2. 공고 대상자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발급기간	반송사유
1	고*혁	050105	예산읍 벚꽃로 82, 104동 702호 (예산ES아뜨리움아파트)	2022.2.1. ~ 2023.1.31.	폐문부재
2	권*원	050126	예산읍 군청로3길 16, 105동 302호 (예산행정타운 신동아파밀리에)	2022.2.1. ~ 2023.1.31.	폐문부재
3	김*혁	050104	예산읍 아리랑로213번길 28, B동 301호(삼미연립)	2022.2.1. ~ 2023.1.31.	폐문부재
4	이*인	050107	예산읍 벚꽃로 175-17, 106동 202호 (휴먼시아아파트)	2022.2.1. ~ 2023.1.31.	폐문부재
5	이*민	050126	예산읍 벚꽃로 175-17, 104동 803호 (휴먼시아아파트)	2022.2.1. ~ 2023.1.31.	폐문부재
6	조*웅	050118	예산읍 벚꽃로 175-17, 104동 904호 (휴먼시아아파트)	2022.2.1. ~ 2023.1.31.	폐문부재
7	최*찬	050113	예산읍 역전로125번길 30-6, 1동 501호(애플빌)	2022.2.1. ~ 2023.1.31.	폐문부재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41-339-8432)

2022. 1. 17.

예 산 읍 장

예산군 공고 제2022 - 100호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축산사업 신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등을 위해 축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축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 신설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8조, 제9조)
 -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등(안 제10조, 제11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2조, 제13조)

4. 입법예고기간 : 2022. 01. 17. ~ 2022. 02. 07.(21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예산군 축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축산과 축산정책팀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우편번호 : 32435)

- 전화 : 041)339-7802, 팩스 : 041)339-7809

4)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팩스제출 시 사전 전화통보 요망)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축산과 축산정책팀

【☎(041)339-78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축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축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군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축산인의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 군의원
2. 예산군 축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
3.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임기 중 이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 수행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반기별 1회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정책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제8조(축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축산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축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u>1. 예산군 축산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2. 축산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u> <u>3. 축산인의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신 설></u></p>	<p><u>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u></p>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예산군의회 군의원
- 2. 예산군 축산업 종사자 및 관계자
- 3.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2. 임기 중 이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

<신 설>

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 수행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반기별 1회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산정책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

제8조 · 제9조 (생 략)

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 제15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붙임 1】관계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관계 공무원
2.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3.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의2(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의 임원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의 임원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마. 축산 관련 단체의 장

바.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제5조의3(위원의 해촉) ① 제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하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의4(분과위원회)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가축종류별 분과위원회와 축산계열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5(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계획
2. 축산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7(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8(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9(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의10(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5조의8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주요내용)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지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구상 및 수립 등에 따라 추진할
사항으로 재정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축산과장

예산군 공고 제2022-116호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8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일부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안교육기관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 나.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다. 교복구입비 신청서 제출처에 ‘해당 학교의 장’ 추가 및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안 제6조, 별지 서식)

라. 규칙은 위임이 없더라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 삭제(제8조 삭제)

4. 공고(입법예고)기간 : 2022. 1. 18. ~ 2022. 2. 8.(21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예산군 교육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팩스제출 시 사전 전화통보 요망)

라. 의견제출할 곳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우 32435)

- 전화 : ☎041-339-7453 / 팩스 : 041-339-7459

마.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 【☎041-339-74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지원 대상 범위)”를“(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부터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군에 소재한 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 또는

해당 학교의 장”으로 한다.

-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u></p>
<p>제4조(지원 대상 범위) <u>군수가 정한 기준일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1. <u>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u></p> <p>2. <u>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u></p> <p><u><신설></u></p>	<p>제4조(지원 대상) <u>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부터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한정한다.</u></p> <p>1. <u>군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u></p> <p>2. <u>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군에 소재한 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u></p> <p>3. <u>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u></p>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군수는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자의 자격여부와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 또는 해당 학교의 장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별지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학생 인적사항 (생략)			
<input type="checkbox"/>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생략)			
<input type="checkbox"/>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생략)			
※ 구비서류 : 입학(재학)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생략)	
<input type="checkbox"/> 확인사항 (음면담당자)	학생 전입일 :	담 당 자	_____ (인)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학생 인적사항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현행과 같음)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붙임 1】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 2】비용추계서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 발생
(관내 주소 ⇒ 관내 학교 + 관내 주소)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내 고등학교 입학정원 및 '20~'24 고등학교 중기학생 배치계획(충남교육청)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 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250,800	258,324	265,848	273,372	280,896	1,329,240
	소계(b)	250,800	258,324	265,848	273,372	280,896	1,329,240
□ 총 비용(a-b)		-250,800	-258,324	-265,848	-273,372	-280,896	-1,329,240

- 2022학년도 관내 고등학교 입학정원(836명/충남교육청 자료 참고)
-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1인당 300천원 지원
※ 2022년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상한가 기준(308,400원)
- 2021학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수(779명/관내주소 546, 관외주소 23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군 비		250,800	258,324	265,848	273,372	280,896	1,329,240
민 간		-	-	-	-	-	-
기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	-	-	-	-	-
합 계		250,800	258,324	265,848	273,372	280,896	1,329,240

5. 작성자 : 교육체육과장